

2020 예술분야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·기업가 양성 지원 예산편성 기준 (예시)

* 선정 후 세부 예산 계획 수립 시 협의를 통해 세부 항목 변경·조정될 수 있음

- 지원금사용 불가 항목
 - 단순 예술작품 창작 및 제작비(컨설팅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 필요)
 - 현금 지급성 상품권 및 자산 취득성 경비
 - 기업 대표, 임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및 사례비
 - 일상적인 운영 경비 :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, 공과금, 전화요금, 차량구입비, 건물 및 토지매입비,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화설비, 수행사업과 직접연관이 없는 일반운영비 등
 - 기타 :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식비 등의 간접경비,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

목-세목	항목	세부항목	집행기준	사용가능 여부																			
				지원금	자부담금액																		
인건비 (110) -보수 (01)	보수	급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원에 대한 보수 •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•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동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•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국내강사사례비 	X	○																		
운영비 (210) -일반 수용비 (01)	전문가 활용비	강의 사례비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기준</th> <th>사례비 (한도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급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/현직 창/차관급 • 전/현직 대학총장/학장급 •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위원, 국장급 이상 •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 (변호사, 회계사, 의사, 작가 등) •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</td> <td>30만원/h (1회 2시간 기준)</td> </tr> <tr> <td>B급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 조교수 이상 • 기업/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, 중역 •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사단·재단 재직자 • 개인기관의 장(원장, 소장) •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• 전문직 종사자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•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 </td> <td>20만원/h (1회 2시간 기준)</td> </tr> <tr> <td>C급</td> <td>• A, B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강사급</td> <td>10만원/h (1회 2시간 기준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2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가능 ※ 위 강의료에는 강의 원고료,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※ 위 기준단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강 등의 경우에는(전문강사, 대중강사, 해외초청인사 등) 시장가격, 타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별도 책정 가능</p>	구분	기준	사례비 (한도)	A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/현직 창/차관급 • 전/현직 대학총장/학장급 •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위원, 국장급 이상 •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 (변호사, 회계사, 의사, 작가 등) •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	30만원/h (1회 2시간 기준)	B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 조교수 이상 • 기업/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, 중역 •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사단·재단 재직자 • 개인기관의 장(원장, 소장) •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• 전문직 종사자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•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 	20만원/h (1회 2시간 기준)	C급	• A, B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강사급	10만원/h (1회 2시간 기준)	○	○						
		구분	기준	사례비 (한도)																			
A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/현직 창/차관급 • 전/현직 대학총장/학장급 •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위원, 국장급 이상 •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 (변호사, 회계사, 의사, 작가 등) •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	30만원/h (1회 2시간 기준)																					
B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 조교수 이상 • 기업/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, 중역 • 정부 출연기관 및 문화예술계 사단·재단 재직자 • 개인기관의 장(원장, 소장) •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• 전문직 종사자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•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 	20만원/h (1회 2시간 기준)																					
C급	• A, B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강사급	10만원/h (1회 2시간 기준)																					
		발표 및 토론, 진행자 사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심포지움, 컨퍼런스 등의 행사의 발표자 및 토론자, 국내 사회자, 모더레이터 사례비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기준</th> <th>한도 (1회 3시간 기준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발표자</td> <td>A급 (강의사례비 기준 동일)</td> <td>40만원</td> </tr> <tr> <td>B급/C급 (강의사례비 기준 동일)</td> <td>30만원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사회자</td> <td>A급 (강의사례비 기준 동일)</td> <td>30만원</td> </tr> <tr> <td>B급/C급 (강의사례비 기준 동일)</td> <td>20만원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토론자</td> <td>A급 (강의사례비 기준 동일)</td> <td>20만원</td> </tr> <tr> <td>B급/C급 (강의사례비 기준 동일)</td> <td>15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3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만원씩 지급 가능 ※ 위 사례비에는 원고료,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※ 위 기준단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강 등의 경우에는(전문강사, 대중강사,</p>	구분	기준	한도 (1회 3시간 기준)	발표자	A급 (강의사례비 기준 동일)	40만원	B급/C급 (강의사례비 기준 동일)	30만원	사회자	A급 (강의사례비 기준 동일)	30만원	B급/C급 (강의사례비 기준 동일)	20만원	토론자	A급 (강의사례비 기준 동일)	20만원	B급/C급 (강의사례비 기준 동일)	15만원	○	○
구분	기준	한도 (1회 3시간 기준)																					
발표자	A급 (강의사례비 기준 동일)	40만원																					
	B급/C급 (강의사례비 기준 동일)	30만원																					
사회자	A급 (강의사례비 기준 동일)	30만원																					
	B급/C급 (강의사례비 기준 동일)	20만원																					
토론자	A급 (강의사례비 기준 동일)	20만원																					
	B급/C급 (강의사례비 기준 동일)	15만원																					

목-세목	항목	세부항목	집행기준	사용가능 여부													
				지원금	자부담금액												
운영비 (210) -일반 수용비 (01)	전문가 활용비	아티스트 및 연출자 사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외초청인사 등 시장가격, 타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별도 책정 가능 아티스트, 연출자, 감독 등 예술가들의 전문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비 ※ 사례비 책정 기준 제시(활동 경력 등) 	○	○												
		원고 및 편집사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내국인에게 요청한 원고료, 편집, 교정에 대한 사례비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기준 1 (원고 집필인)</th> <th>기준 2 (원고 내용)</th> <th>사례비(한도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· 전문 작가 · 해당분야 전문가 · 외부인사지급기준 A등급 해당 인사</td> <td>· 고급원고 (연재물, 전문가 지식 수록, 칼럼 독창적인 내용이 우수한 원고)</td> <td>200자 원고지 1장당 2만원</td> </tr> <tr> <td>· 해당 분야 유경험자 · 전문작가 수준의 필자</td> <td>· 일반원고 (작성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원고)</td> <td>200자 원고지 1장당 1만5천원</td> </tr> <tr> <td>· 일반인, 독자 외</td> <td>· 자료원고 (자료를 인용 및 재가공 하여 작성한 원고)</td> <td>200자 원고지 1장당 5천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위 2개 기준 중 1개 기준 적용 ※ 위 기준단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별도 책정 가능 	기준 1 (원고 집필인)	기준 2 (원고 내용)	사례비(한도)	· 전문 작가 · 해당분야 전문가 · 외부인사지급기준 A등급 해당 인사	· 고급원고 (연재물, 전문가 지식 수록, 칼럼 독창적인 내용이 우수한 원고)	200자 원고지 1장당 2만원	· 해당 분야 유경험자 · 전문작가 수준의 필자	· 일반원고 (작성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원고)	200자 원고지 1장당 1만5천원	· 일반인, 독자 외	· 자료원고 (자료를 인용 및 재가공 하여 작성한 원고)	200자 원고지 1장당 5천원	○	○
		기준 1 (원고 집필인)	기준 2 (원고 내용)	사례비(한도)													
		· 전문 작가 · 해당분야 전문가 · 외부인사지급기준 A등급 해당 인사	· 고급원고 (연재물, 전문가 지식 수록, 칼럼 독창적인 내용이 우수한 원고)	200자 원고지 1장당 2만원													
		· 해당 분야 유경험자 · 전문작가 수준의 필자	· 일반원고 (작성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원고)	200자 원고지 1장당 1만5천원													
· 일반인, 독자 외	· 자료원고 (자료를 인용 및 재가공 하여 작성한 원고)	200자 원고지 1장당 5천원															
자문사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심사, 평가, 자문위원 회의참석에 대한 사례비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기 준</th> <th>사례비(한도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회의 참석수당</td> <td>· 자문회의 · 좌담회</td> <td>10만원/일 (1회 2시간 기준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2시간 초과 시 초과회의비 5만원 지급 가능(1일 총 15만원) 	구분	기 준	사례비(한도)	회의 참석수당	· 자문회의 · 좌담회	10만원/일 (1회 2시간 기준)	○	○								
구분	기 준	사례비(한도)															
회의 참석수당	· 자문회의 · 좌담회	10만원/일 (1회 2시간 기준)															
컨설팅 사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문 컨설팅 업무에 대한 사례비(1회 2시간 기준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기 준</th> <th>사례비 (한도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급</td> <td>· 전/현직 장/차관급 · 전/현직 대학총장/학장급 ·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·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위원, 국장급 이상 ·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 가 필요한 경우(변호사, 회계사, 의사, 작가, 예술인, 연예인 등) ·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</td> <td>30만원/h</td> </tr> <tr> <td>B급</td> <td>·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(기능대) 조 교수 이상 · 기업/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, 중역 · 정부 출연기관(연구기관) 및 문화예술계 사단. 재단법인 재직자 · 개인기관의 장(원장, 소장) ·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 의 국장급 이상 · 전문직 종사자 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 는 경우 ·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</td> <td>20만원/h</td> </tr> <tr> <td>C급</td> <td>· A, B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강사급</td> <td>10만원/h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기 준	사례비 (한도)	A급	· 전/현직 장/차관급 · 전/현직 대학총장/학장급 ·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·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위원, 국장급 이상 ·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 가 필요한 경우(변호사, 회계사, 의사, 작가, 예술인, 연예인 등) ·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	30만원/h	B급	·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(기능대) 조 교수 이상 · 기업/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, 중역 · 정부 출연기관(연구기관) 및 문화예술계 사단. 재단법인 재직자 · 개인기관의 장(원장, 소장) ·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 의 국장급 이상 · 전문직 종사자 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 는 경우 ·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	20만원/h	C급	· A, B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강사급	10만원/h	○	○		
구분	기 준	사례비 (한도)															
A급	· 전/현직 장/차관급 · 전/현직 대학총장/학장급 ·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·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위원, 국장급 이상 ·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 가 필요한 경우(변호사, 회계사, 의사, 작가, 예술인, 연예인 등) ·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	30만원/h															
B급	·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(기능대) 조 교수 이상 · 기업/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, 중역 · 정부 출연기관(연구기관) 및 문화예술계 사단. 재단법인 재직자 · 개인기관의 장(원장, 소장) ·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 의 국장급 이상 · 전문직 종사자 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 는 경우 ·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	20만원/h															
C급	· A, B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강사급	10만원/h															
학술연구 용역 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개발 및 시장조사 등 학술연구에 필요한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등 급</th> <th>월 임금(20년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책임연구원</td> <td>월 3,229,730원</td> </tr> <tr> <td>연구원</td> <td>월 2,476,514원</td> </tr> <tr> <td>연구보조원</td> <td>월 1,655,466원</td> </tr> <tr> <td>보조원</td> <td>월 1,241,642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%로 산정한 것이며,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※ 특별한 기준단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타 인적용역의 경우에도 이 기준단가가 적용 	등 급	월 임금(20년)	책임연구원	월 3,229,730원	연구원	월 2,476,514원	연구보조원	월 1,655,466원	보조원	월 1,241,642원	○	○				
등 급	월 임금(20년)																
책임연구원	월 3,229,730원																
연구원	월 2,476,514원																
연구보조원	월 1,655,466원																
보조원	월 1,241,642원																

목-세목	항목	세부항목	집행기준					사용가능 여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			지원금	자부담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영비 (210) -일반 수용비 (01)	전문가 활용비	통/번역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역 사례비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언어</th> <th>통역 방법</th> <th>1시간 까지</th> <th>6시간 까지</th> <th>6시간 초과 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영어 아랍어 독일어</td> <td>동시통역 순차통역</td> <td>500,000</td> <td>900,000</td> <td>영어, 아랍어 150,000원/시간 독일어 100,000원/시간</td> </tr> <tr> <td>일어 중국어</td> <td>동시통역 순차통역</td> <td>600,000</td> <td>800,000</td> <td>100,000원/시간</td> </tr> <tr> <td>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, 인도네시아어</td> <td>동시통역 순차통역</td> <td>600,000</td> <td>900,000</td> <td>100,000원/시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전문 회의통역의 경우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 적용 ※ 의전통역의 경우에도 위 기준 적용 ※ 단순행사통역의 경우 20,000원/h 기준 적용 ※ 위의 기준금액은 최대 한도로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세(10%)별도 • 번역 사례비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방법별</th> <th>언어별</th> <th>단가기준</th> <th>단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한국어 →외국어</td> <td>영어</td> <td>한국어 원문1자당</td> <td>160원</td> </tr> <tr> <td>일어</td> <td>한국어 원문1자당</td> <td>100원</td> </tr> <tr> <td>중국어</td> <td>한국어 원문1자당</td> <td>100원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외국어 →한국어</td> <td>영어</td> <td>영어 1단어당</td> <td>180원</td> </tr> <tr> <td>일어</td> <td>일어 원문1자당</td> <td>80원</td> </tr> <tr> <td>중국어</td> <td>중국어 원문1자당</td> <td>8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 적용 ※ 외국어→외국어로 번역 시 위 기준을 준용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 업체 대행의뢰 사례 및 시장가격 비교검토 등의 방법으로 단가 책정 ※ 감수료의 경우 위 기준의 최대 50%까지 적용 ※ 위 단가내역은 텍스트 기준이며, 영상 및 오디오 등 매체 번역의 경우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번역료 요율표 준용 또는 전문 업체 대행의뢰 사례 및 시장가격 비교검토 등의 방법으로 단가 책정 					언어	통역 방법	1시간 까지	6시간 까지	6시간 초과 시	영어 아랍어 독일어	동시통역 순차통역	500,000	900,000	영어, 아랍어 150,000원/시간 독일어 100,000원/시간	일어 중국어	동시통역 순차통역	600,000	800,000	100,000원/시간	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, 인도네시아어	동시통역 순차통역	600,000	900,000	100,000원/시간	방법별	언어별	단가기준	단가	한국어 →외국어	영어	한국어 원문1자당	160원	일어	한국어 원문1자당	100원	중국어	한국어 원문1자당	100원	외국어 →한국어	영어	영어 1단어당	180원	일어	일어 원문1자당	80원	중국어	중국어 원문1자당	80원	○	○
		언어	통역 방법	1시간 까지	6시간 까지	6시간 초과 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영어 아랍어 독일어	동시통역 순차통역	500,000	900,000	영어, 아랍어 150,000원/시간 독일어 100,000원/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일어 중국어	동시통역 순차통역	600,000	800,000	100,000원/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, 인도네시아어	동시통역 순차통역	600,000	900,000	100,000원/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방법별	언어별	단가기준	단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한국어 →외국어	영어	한국어 원문1자당	16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일어	한국어 원문1자당	1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중국어	한국어 원문1자당	1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외국어 →한국어	영어	영어 1단어당	18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일어	일어 원문1자당	8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중국어	중국어 원문1자당	8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회계관리 수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총사업비 회계감사수수료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3천만원미만</th> <th>296,000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</td> <td>352,000</td> </tr> <tr> <td>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</td> <td>383,000</td> </tr> <tr> <td>5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</td> <td>530,000</td> </tr> <tr> <td>6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</td> <td>574,000</td> </tr> <tr> <td>7천만원이상 8천만원미만</td> <td>619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					3천만원미만	296,000	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	352,000	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	383,000	5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	530,000	6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	574,000	7천만원이상 8천만원미만	619,000	X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천만원미만	296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천만원이상 4천만원미만	352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	383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	53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천만원이상 7천만원미만	574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천만원이상 8천만원미만	619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전문가 활용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행사 진행을 위한 국내 코디네이터 사례비 • 상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, 타인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등을 활용하고 지급한 대가 (참고)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,590원, 일급(8시간) 68,720원, 월급(209시간) 1,795,310원 					○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단기인력비	단기인력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식채용이 아닌 경우로서 행사 등의 기간 동안 인력 수급을 위해 소요된 비용(7일 이내) ((예)행사 및 공연(포럼, 컨퍼런스 등)의 보조인력) (참고)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,590원, 일급(8시간) 68,720원 					○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모품비	행사소모품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행사(워크숍, 세미나, 포럼, 자문회의, 쇼케이스) 등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소액 다수의 물품비 ※ 사무용품 및 집기비품, 회의물품 구입 불가 					○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영비	운송비	운송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편이외의 수단을 이용한 운송료 					○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목-세목	항목	세부항목	집행기준	사용가능 여부	
				지원금	자부담금액
(210)-일반수용비 (01)	도서 인쇄비	인쇄 제작비	• 자료보고서 책자(홍보용 제외) 등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에 소요된 비용	○	○
	행사부대 비용	행사부대 비용	• 컨퍼런스, 심포지움, 설명회, 교육 등 행사에 사용되는 소액 다수경비로서 행사소모품비를 제외한 비용 1) 입장료, 관람료, 체험비, 참가료 2) 주차권 등	○	○
	홍보 마케팅비	광고 매체 수수료	• 전파(티비, 인터넷, 라디오 등), 인쇄(신문, 간행물, 잡지 등) 이용수수료	○	○
홍보물 제작비		• 홍보용 물품, 팸플릿, 포스터, 영상 등 제작비 ※ 현금 지급성 상품권 등 구매 불가	○	○	
운영비 (210)-임차료 (03)	임차료	대관료	• 행사(아트마켓 등 사업행사) 등 사업을 위한 장소 대관료	○	○
		임차료	• 행사 등 이동차량(버스, 승용차 등) 임차료 • 행사사용 전자기기, 집기, 가구 등에 대한 임차료 ※ 행사 당일 사용만 가능		
운영비 (210)-일반용역비 (14)	대행 용역비	대행 용역비	• 만족도조사, 원가계산, 연구 및 실태조사, 성과평가 등의 조사연구대행 용역비 • 사진촬영인쇄 및 영상촬영, 동영상제작 등의 촬영 및 영상제작대행 용역 • 홍보기획, 제작, 배포, 홍보마케팅 일체 또는 일부분을 위탁하는 홍보대행용역비 • 웹 또는 앱 개발 등 시스템 개발 대행 용역비 • 과업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외주업체에 위탁하여 진행시 소요되는 외주용역비 ※ 외주업체와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모든 용역비 ※ 산출근거 증빙 필수	○	○
여비 (220)-국내여비 (01)	국내 여비	국내 여비	• 운임(항공,철도,선박,버스), 체재비(숙박비) 등 ※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※ 산출근거 증빙 필수 ※ 지원금에서는 서울·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기업에서 사용한 교통비, 본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	○	○
여비 (220)-국외여비 (01)	국외 여비	국외 여비	• 운임(항공,철도,선박,통행세), 체재비(숙박비) ※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※ 산출근거 증빙 필수	○	○
업무추진비 (240)-사업추진비 (01)	사업추진비	사업추진비	•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, 접대비, 연회비 및 기타에 소요되는 식대, 케이터링, 다과비 등 (예시) 정례회의경비, 외빈초청접대경비, 해외출장지원경비, 행사경비 등	X	○